

노동부·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노동부는 11월 20일부터 연말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장 안전보건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과 동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및 석면·TCE 등 유해물질 취급업종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다.

합동점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및 보건상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전담 안전관리자의 겸직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여부, 타워크레인 안전규칙의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사업주의 개선 의지는 있으나 재정적·기술적 여건의 한계로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정·기술지원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보건 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한편, 노동부는 '03년도 하반기 이후 검찰과 6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약 95%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김동남(金東男)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적발하여 산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게차 운전자도 안전띠 착용은 필수

내년부터 작업장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도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지게차 전도·전복에 의한 사망재해를 보면 '03년 19명, '04년 26명, '05년 28명 등 총 73명에 이르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안전띠 착용의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지게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거 안전띠를 의무

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일반 자동차의 경우 안전띠 착용 풍토가 정착되어 사망사고가 감소한 사례에서 처럼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도 사망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번에 이를 의무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단을 작업장 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하

는 경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1.2m 이상의 안전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토록 하였다. 아울러 전기기계·기구 보수 작업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70cm 이상의 작업공간과 150력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토록 하는 개선조치도 마련하였다.

타워크레인 조종도 자격증 필수

2007년 7월부터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자도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5톤 이상 무인타워크레인은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서는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등의 자격을 갖춘자가 있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월 26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은 지금까지 「기중기운전기능사」가 수행하였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05.11월 신설)」자격이 있어야만 된다.

다만, 내년 7월 이전에 「타워크레인조종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다. 또한,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개월 이상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에는 '08년까지 16시간의 교육을, 3년 이상 무인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에는 '07년까지 16시간의 교육을, 6개월 이상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한 경우에는 '07년까지 24시간의 교육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작업의 자격자로 인정된다.

진폐 건강진단 신뢰성 높인다

노동부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진폐 건강진단 및 정

도관리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엑스선촬영기에서 엑스선이

발생하는 관(엑스선 관)의 음극과 양극 간에 걸리는 전압을 높여 엑스선 필름의 선명도를 높이는 관전압을 현행 100KV에서 120KV로 높여 진폐근로자의 진폐정도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사선 노출시간을 현행 1/10초에서

1/30초로 단축시켜 엑스선 촬영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진폐근로자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향상 돼 진폐근로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역 『뇌심혈관질환예방 사업장』지도·점검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지청장 朴鍾善)은 '06년 5월부터 10월말까지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관내(영등포, 강서 및 양천구) 8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질환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41개 사업장 96건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지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지도·점검은 작업관련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질환발생, 그릴 위험이 내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와 근로자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였다. 또한,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취급작업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미비치,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위험물질에 대한 안내표지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96건을 적발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선토록 지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청은 시정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까지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남부지청은 작업관련질환 재해예방을 위하여 근로자의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기인하여 유발되는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고혈압예방과 치료”, “근골격계질환예방 지도” 등 안내팸플릿 제작배포 및 산재예방거리 캠페인 실시 등 작업관련질환 재해예방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비정규직고용사업장 안전보건 점검』실시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9월 10일 ~ 11월 7일까지 영등포, 강서 및 양천구지역의 비정규직고용사업장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40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27개 사업장, 62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고용불안과 함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일반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으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함에 따라 금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이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 조사 미실시, 또는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27개 사업장 62건을 적발하고 적법하게 시정토록 지시하였다. 또한, 이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를 한다.

영등포, 강서 및 양천구지역 『사망재해 20대 다발작업』사업장 지도·점검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현장이나 제조사업장에서 협착,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 등으로 사망재해발생위험이 높은 20대 다발작업을 하는 24개소에 대하여 9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36건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지시 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지도점검은 5대 재래형 반복재해(협착,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상황, 노사협력적 산재예방을 위한 활동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관리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건설현장의 안전난간 미설치, 부실한 작업발판, 제조사업장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미비치, 근로자건강진단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36건을 적발하여 빠른 시일내 개선토록 지시하였으며, 시정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